



國際條約基準에 의한 非獨創性 데이터베이스 保護에 관한 考察

장 태종 선임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정보콘텐트개발실

차례

- I. 서론
- II. 국제조약에 의한 데이터베이스의 보호동향
 - 1. 세계 지적재산권기구(WIPO)
 - 2. 유럽연합(EU)에서의 데이터베이스의 논의
 - 3. 미국에서의 데이터베이스의 논의
 - 4. 일본에서의 데이터베이스 논의
 - 5. 멕시코에서의 데이터베이스 논의
- III. 세계각국의 데이터베이스 보호를 위한 법제도 현황
 - 1. 미국에서 관련법 제도현황
 - 2. EU(유럽)의 관련법 제도현황
 - 3. 일본에서의 관련법 제도현황
 - 4. 호주에서의 관련법 제도현황
- IV. 국내의 데이터베이스 보호를 위한 법제도 현황
 - 1. 국내의 저작권법
 - 2. 데이터베이스보호법의 2003년 개정안
 - 3. 국내 데이터베이스의 추가적인 보호문제
 - 1) 독자적인 권리 인정하는 방안
 - 2) 부정경쟁 행위를 통하여 보호하는 방안
 - 3) 부정경쟁방지법에 규정하는 방법
 - 4)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규정하는 방법
- V. 우리나라 데이터베이스의 법적 보호해법
- VI. 맺음말
- [참고문헌]

(고득은 이번호 명조는 다음호)

I. 서론

최근 컴퓨터 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데이터베이스 산업은 매우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고도 정보화 시대를 주도해 나아가고 있다. 또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정보수요는 날로 늘어가고 있는데 비해서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들은 엄청난 비용과 노력을 들여 만든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투자자본을 회수하고 그 이익을 향유하기 위하여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적절한 법적 보호를 요구하고 있다. 데이터베이스를 타인이 손쉽게 무단으로 이용하거나 추출한다면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제작 의욕이 감퇴되는 것은 당연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독창성 결여로 인한 데이터베이스의 방치하는 것은 현대정보사회의 생활 및 그 발전에 불가결한 요소임이 두말할 나위 없다. 그런데 현재 유럽연합의 회원국을 위시한 일부국가들을 제외하고는 데이터베이스 자체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전혀 없거나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 있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투자의욕

을 저하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각국이 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특히 데이터베이스의 보호에 있어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앞으로의 전체 산업발전은 정보산업의 발달여부에 그 성패가 달려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각국은 데이터베이스 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적극적인 주도하에 그 보호제도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통적인 저작권법¹⁾하에서도 데이터베이스는 그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에 독창성이 전제되는 한 편집저작물의 일종으로 보호될 수 있으나, 비독창성의 경우에 전혀 보호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단순히 비독창성만으로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법적 보호를 전적으로 부인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 제작과정에서 적지 않은 재정적, 인적 및 시간적 투자를 한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는 어떠한 형태로든 제3자가 그 투자의 산물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보호받아야 한다.

설혹 데이터베이스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다 하더라도 그 보호는 저작자의 독창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충분한 보호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데이터베이스의 경제적 가치는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나 표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 자체에 달려있다. 따라서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을 구성하는 정보를 수집 또는 가공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투자를 한 제작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독창성을 보호하는 저작권이 아니라, 투자를 보호하는 제3의 방법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일찍이 있어 왔고, 이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그 보호제도를 논함에 있어,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투자의욕을 촉진시키

고 그 투자를 보호한다는 측면뿐만 아니라, 일반 공중이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이익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측면도 고려하여야 한다. 저작권법 제6조 제1항에서는 데이터베이스를 “논문·수치·도형 기타 자료의 집합물로서 이를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나 이는 예시 규정을 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우리의 법제는 데이터베이스의 저작권법적 보호에 관한 많은 논란이 있었고 학자들의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문화관광부는 창작성을 결여한 데이터베이스의 제작자에게 저작인접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안을 제출해서 2003년 4월 29일 국회를 통과했다.²⁾

따라서 본고에서는 우선, 미국, 일본, 멕시코 등의 나라에서 데이터베이스의 보호동향에 대한 고찰을 해보고, 세계각국의 데이터베이스 보호를 위한 법제도 현황, 한국내의 데이터베이스 보호를 위한 법제도 현황, 우리나라 데이터베이스의 법적 보호해법을 통한 우리나라의 데이터베이스의 활로를 찾는데 대하여 검토를 해보고자 한다.

II. 국제조약에 의한 데이터베이스의 보호동향

데이터베이스는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6조 제1항의 팔호 내에서 ‘논문, 수치, 도형 기타 자료의 집합물로서 이를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것’으로 정의되며, 이는 편집물의 하나로 인정된다. 편집물이라

1) 정상조, “데이터베이스 보호법(1)”,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法曹 37권 3·4호

2) 2003.5.27. 공포, 법률 제6881호

함은 기존의 자료나 데이터를 수집, 조합하여 이루어진 것을 말하며, 이 중에서 그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이 창작성이 있는 것이 편집 저작물이 된다. 이와 같은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규정은 1994년 저작권법 개정에 의해 추가되었다.

구미 저작권법 제도하에서, 데이터베이스는 일반적으로 편집 저작물의 한 종류로 보호되고 있으며,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명문 규정을 두고 있는 국가는 거의 없고 해석상 편집 저작물의 한 종류로 취급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다.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최초의 국제조약은 1993년 체결된 TRIPS 협정이다. 이 협정에서는 데이터베이스를 편집저작물로 규정하고 저작권법으로 보호하도록 하였다. 저작권법으로 보호하려면 어려한 경우라도 창작성이 있어야 하므로, 창작성이 없는 데이터베이스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았다. 1996년 WIPO 저작권 조약에서는 ‘창작성 없는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하기 위하여 ‘데이터베이스 지적재산권 조약안(Draft Treaty on Intellectual Property in Respect of Database)’ 까지 마련되었으나, 시민단체와 개발도상국들의 반대로 인해 계속 논의하기로 하고, WIPO 저작권 조약의 최종 채택 과정에서 누락되었다. 이후 1997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데이터베이스의 지적재산권에 관한 정보 회의(Information Meeting on Intellectual Property in Database)’에서는 데이터베이스의 보호에 관한 각국 입법 및 각 회원국들이 제출한 정보를 가지고 토론을 하였는데, 대체로 창작성 없는 데이터베이스의 보호 필요성은 인식하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다 많은 연구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출되었다.

1998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저작권 상설위원회에서는 시청각 실연의 보호 및 방송사업자의 보호에 관한 문제와 함께 창작성 없는 데이터베이스의 보호문제를 논의하였다. 유럽연합 대표는 유럽연합의 데이터베이스 지침에 근거하여 창작성 없는 데이터베이스의 보호를 주장하였고, 미국 대표는 창작성 없는 데이터베이스라 하더라도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으나, 공정 이용과 공익 목적에 의한 예외의 설정문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인도, 아프리카 지역 등 개도국들은 창작성 없는 데이터베이스의 보호는 교육 과학 목적 등의 이용을 저해하여 개도국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으며, 국내적으로 보호방안이 논의되고 보호체계를 선택하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1. 세계 지적재산권기구(WIPO)

1996년 12월에 체결된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저작권조약(WCT) 제5조는 “내용의 선택과 배열로 인하여 지적창작물이 되는 자료 또는 기타 소재의 편집물은 그 형태에 관계없이 지적창작물로서 보호된다. 이 보호는 당해 자료 또는 기타 소재 그 자체에는 미치지 아니하며, 그 편집물에 수록된 자료나 소재에 존속하는 저작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³⁾

위 규정은 TRIPS 협정 제10조 제2항과 동일하다. 즉, 데이터베이스는 소재의 선택이나 배열에 창작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편집저작물로 보호된다.

한편, 1996년 12월 조약의 체결을 위한 WIPO 외교회의에는 데이터베이스의 지적재산권조약안(Draft Treaty on Intellectual Property in Res-

3) 사법연수원, 저작권법(II)(2001), 56면, 57면.

pect of Database)도 제출되었으나, 위 조약안은 다수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폐기되고 말았다. 그러나 WIPO 외교회의는 데이터베이스 보호 문제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논의한다는 결론을 내렸다.⁴⁾

또한 1997년 9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데이터베이스의 지적재산권에 관한 정보 회의' (Information Meeting on Intellectual Property in Database)에서는 데이터베이스의 보호에 관한 각국의 입법 및 각 회원국들이 제출한 정보를 토대로 논의하였다. 대체로 창작성 없는 데이터베이스의 보호에 대한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보다 많은 연구·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특히, 많은 국가들의 대표들은 창작성 없는 데이터베이스의 보호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공익적인 측면도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⁵⁾

한편, WIPO는 저작권 분야를 위해서 '저작권 및 관련 권리에 관한 상설위원회' (Standing Committee on Copyright and Related Rights)를 두고 있는데, 데이터베이스 문제도 여기서 다루고 있다.⁶⁾

2. 유럽연합(EU)에서의 데이터베이스의 논의

유럽연합은 데이터베이스의 보호를 가장 적극

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미 1996년 창작성 없는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하여 데이터베이스 보호에 대한 지침을 채택하였다. 이 지침은 데이터베이스를 저작권법으로 보호하지 않고, 지적재산권 체계 안에서 2000년부터 '독자적인(sui generis) 권리'를 부여하여 보호하고 있다.

이 권리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에게 데이터베이스의 내용 전부 또는 실질적인 부분(substantial part)을 추출하거나 재이용하는 것에 대한 배타적 권리(지침 제7조)로 규정하였으며, 그 존속기간을 15년으로 하였다. 이 때 데이터베이스에 계속적인 추가, 삭제 또는 변경이 이루어지면, 실질적인 투자로 간주될 수 있고, 데이터베이스 내용에 대한 양적이나 질적으로 실질적인 변경이 있는 경우에 그러한 데이터베이스는 별도의 보호기간을 갖게 된다(지침 제 10조)고 규정하여 변경된 부분에 대해 권리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도록 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지침에 특이한 것은 외국인의 데이터베이스 보호에 대해 상호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유럽연합에서 데이터베이스를 보호받고자 하는 나라는 유럽연합의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해야 하도록 해놓고 있다.

3. 미국에서의 데이터베이스의 논의

미국 법원은 현재까지는 데이터베이스의 보호 기준을 창작성에 근거하여 창작성 없는 데이터베

4)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데이터베이스의 추가보호, 23면.

5)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데이터베이스의 추가보호, 23면(이 회의는 폐막에 앞서 "국제사무국은 회의기간 동안 제기된 문제를 요약한 문서를 회의보고서의 부속문서로 첨부하여 WIPO 및 유럽연합의 회원국, 정부간 기구 및 비정부간 기구에 회람한 후 1998년 4월 말까지 문서상에 나타난 관련 문제 및 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 및 정보를 요약 분석한 문서를 WIPO 회원국들에게 발송한다"는 권고안을 채택하였다).

6)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데이터베이스의 추가보호, 21면부터 23면까지 참조. SCCR 회의에서, 대체로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들의 대표들은 창작성 없는 데이터베이스의 보호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 미국 대표는 국내적으로 데이터베이스 보호를 위한 입법 추진이 계속되고 있으나 예외의 설정 등이 어려운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들을 국제적인 차원에서 논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인도, 아프리카 지역 등 개도국들의 대표들은 창작성 없는 데이터베이스의 보호는 교육·과학 목적 등의 이용을 저해하여 개도국의 발전을 더디게 할 수 있다면서 국내적으로 보호방안을 논의하고 보호체계를 선택하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현 시점에서 창작성 없는 데이터베이스의 보호를 위한 국제조약화보다는 우선 국내적 차원의 데이터베이스 보호에 한정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하였다.

이스에 대한 보호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1996년 유럽연합의 지침에 근거하여 ‘데이터베이스 및 지적재산권 침해 금지 법안’에 대한 입법이 추진되었으나, 법적 책임에 대한 부담을 우려한 인터넷 서비스업자들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이 법안은 데이터베이스의 보호기간을 25년으로 규정하였고, 유럽연합의 데이터베이스 지침이 상호 주의를 채택하고 있음에 반하여 내국민대우의 원칙에 입각해 있다. 이후 다시 독창성 없는 데이터베이스의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정보수집물에 대한 부정이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제출되었으나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 법안은 부정 경쟁방지법의 부정사용 부분을 근거로 정보수집물 제작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방법으로 정보수집물의 전부 또는 양질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부분을 상업적 목적으로 추출하거나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었다. 미국에서는 1991년 연방대법원에 의하여 선고된 Feist 사건⁷⁾에서 저작권은 단순히 노력이 투자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창작성이 있어야 보호되는 것이므로 창작성이 없는 정보의 단순한 집합은 저작권으로 보호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된 이후 창작성이 없는 데이터베이스의 제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인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⁸⁾

미국에서 검토되었거나 계류중인 데이터베이

스 보호법안은 1996. 6. 하원에 제출된 데이터베이스의 투자 및 지적재산 침해금지법안, 1997년 하원에 제출된 “정보수집물의 침해금지법안”, 1999년 하원에 제출된 정보수집물의 침해금지법안(The Collections of Information Anti-piracy Act, HR 354), 1999년에 제출된 소비자 및 투자자의 정보접근법안(The Consumer and Investor Access to Information Act. H.R.1858) 등이 있다.⁹⁾

미국 데이터베이스 보고서의 내용 추가 보호론은

- ① 데이터베이스는 경제 및 과학에 있어 그 중요성을 더해 가고 있고 인터넷 상의 핵심적 요소가 되고 있으며, 그 효용가치가 매우 크다.
- ② 데이터베이스 제작·유지에는 대규모 투자 필요하다.
- ③ 이에 반하여 복제·배포 기술의 발달로 데이터베이스를 복제하여 배포하는 데는 저비용으로 가능하다.
- ④ 현재의 법률로는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하기에 부적절하다.
- ⑤ 적절한 법적 보호 부족은 데이터베이스 제작·유지 투자의 감소로 공중의 손해이다.
- ⑥ 이용자의 합법적 이익을 해함이 없는 적절한 법적 보호 입법 가능하다. 필요한 보호는 적절하게 만들어진 새로운 입법을 통해 과학공

7) Feist Publications v. Rural Telephone Services 499 U.S. 340(1991), 원고는 미국 Kansas 주의 일부 지역에 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신회사로서 기입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를 알파벳순으로 정리한 인명판 전화번호를 발간하였다. 피고 역시 전화번호부를 발간하기 위하여 원고에 대하여 기입자의 명단을 별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원고의 허락도 없이 원고의 전화번호부에서 1,300여명의 명단을 별도로 전화번호부를 발간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자신의 전화번호부를 별도로 복사한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등의 소송을 청구하였다. 제1심 및 제2심 법원은 피고의 저작권침해를 인정하였으나, 연방 대법원은 전화번호부의 수집에 쏟은 노력과 자본만으로는 독창성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노력 이상의 어떤 창작성이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단지 알파벳순으로 전화번호를 배열하여 편집한 원고의 전화번호부는 아무런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으로서의 편집저작물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8) 최정열, 전개논문, 52면, 53면.

9) 법안의 상세에 관하여는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데이터베이스의 추가보호, 30면부터 43면까지 참조

동체 및 다른 이용자 단체의 합법적 이익을 해하지 아니하고 제공될 수 있다.

- ⑦ 데이터베이스 산업이 유럽으로부터의 부정 경쟁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세계 데이터베이스 시장에서의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마련된 EU 데이터베이스 지침은 상호주의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흠클 친한으로 해석될 것이고 미국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들은 유럽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시장을 빼앗기게 된다.

또한 추가 보호 반대 또는 신중론은

- ① 입법적 해결 필요성 입증 부재 : 데이터베이스 추가 보호 필요성에 대한 찬성론자들의 논의는 고립된 해석 그리고 가능한 미래의 해악에 대한 추측에 근거하고 있다. EU 데이터베이스 지침은 흠클이 있는 모델 일뿐더러 심각한 손해를 야기하지 않을 것이다.
- ② 현행 법적 · 계약적 · 기술적 보호의 적절성 : Feist 판결 이후에도 저작권법은 계속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하고 있다. 더욱이 데이터베이스는 부정이용, 계약 등으로 보호된다. 한편 기술조치로의 보호 또한 가능하고 효과적이다. 더욱이 데이터베이스 개발자를 기생적 경쟁으로부터 보호하는 다양한 시장 요소들이 있다. 따라서 데이터베이스의 보호는 현행 보호수단으로도 충분하다.
- ③ 데이터베이스 산업은 현행 법제도 하에서 변창 중 : Feist 판결로 달라진 것은 없다. Feist 판결은 보호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저작권법의 원칙에 충실한 판단을 했을 뿐이다. Feist 판결 후 데이터베이스 회사는 이 판결에 잘 적용하고 있었다고 보도되었다.
- ④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 결과의 위험이 있으므로 신중한 진행 필요 : 미래를 예견하기는 어

렵기 때문에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과 데이터의 이용에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 새로운 보호는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정적 결과를 도출할 수도 있다. 실제적인 문제로 정보가 접근이 곤란해질 수도 있고 더 비싸질 수도 있고, 잠재적 책임에 대한 염려는 정보의 이용에 냉각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전통적으로 공유영역에 있던 그리고 여러 이유들로 저작권 기타의 배타적 권리로 보호되지 않았던 사실적 데이터에 대한 접근과 이용에 정당성이 보증되지 않은 제한들이 있게 되었다는 것은 강조될 필요가 있다. 새로운 법적 보호는 후발자에게 새로운 진입장벽이 될 것이다.

- ⑤ 학술환경 및 활동 위협 : 대학의 연구 및 교수는 기본적으로 정보와 정보를 지식으로 전환하는데 매여 있다. 우리의 기초 연구와 교육 시스템의 성공은 사실적 정보에 대한 제한되지 않은 접근 · 이용 및 데이터에 대한 확고한 공유영역 그리고 데이터의 용이한 재이용 · 재편집 · 변형이용에 입각하고 있다. 연구 및 교육 행위를 위해 교수와 학생들은 모든 데이터 편집물에 개방적이고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편집물을 지식의 한계를 확대하고 학생을 교육하기 위해서 작업할 수 있어야 한다.

- ⑥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이 필요하다.
- ⑦ 위헌의 문제 : 헌법의 지적재산권 조항은 창작물을 보호할 권한을 의회에 주고 있으므로 의회는 창작물이 아닌 것을 보호하는 입법을 할 수 없다.

현법상의 언론 · 출판의 자유는 아이디어 시장에서 아이디어의 자유로운 유통을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정보에 재산권을 주는 의회의 권한에 엄격한 제한을 하고 있다. 언론·출판의 자유의 주요한 목적 중 하나는 다양하며 대립된 소스로부터의 정보를 거칠없이 가능한 배포를 보장하는 데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지적재산권 조항과 언론·출판의 자유는 자유의 유지에 있어서 필수적인 협력자이다. 데이터·아이디어가 범주적으로 저작권 보호에서 배제된 까닭은 그것들은 새로운 저작물의 창작에 필요한 빌딩 블럭이기 때문이다.

4. 일본에서의 데이터베이스 논의

일본은 데이터베이스의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두고 있지 않다. 일본 저작권법은 창작성 있는 데이터베이스만을 저작권법으로 보호하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와 달리 데이터베이스를 편집저작물과 구별하여 별도의 저작물로 규정하고 있다.

위 법은, 데이터베이스를 “논문·수치·도형 기타 정보의 자료로서, 그것들의 정보를 전자계산기를 사용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2조 제10호의3), 제12조(편집저작물)의 규정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제외하는 한편, 제12조의2를 신설하여 “데이터베이스 저작물”이라는 제목 하에 “① 데이터베이스로서 그 정보의 선택 또는 체계적인 구성으로 인하여 창작성을 가지는 것은 저작물로 보호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데이터베이스 부분을 구성하는 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데이터베이스의 정의에서 위와 같이 “…체계적으로 구성한 것”이라고 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가독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을

것을 요하지 않고, 그 이전의 단계 즉, 기계적으로 입력하여 컴퓨터에 의하여 그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계통적으로 정리되어 있으면 족하다.

일본의 저작권법이 이와 같이 데이터베이스를 일반 편집저작물과 그 보호의 요건을 달리하고 있는 이유는 편집저작물은 소재의 선택 또는 그 상대적 위치와 같은 물리적 배열에 창작성이 있을 수 있지만, 데이터베이스의 경우에는 소재로 되는 정보의 선택·배열에 창작성보다는 예컨대, 문헌 데이터베이스의 경우에는 초록이 작성되는 경우가 많고, 수치정보나 화상처리 데이터베이스의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처리한다든지 그래프나 일람표를 만드는 등 가공이 되어지며 그밖에도 원자료의 내용을 분석하여 그 결과 추출된 주제나 중요 개념을 표현하는 키워드가 부여되는 등 단순한 편집저작물과는 다른 창작성이 보여지기 때문이라고 한다.¹⁰⁾

5. 멕시코에서의 데이터베이스 논의

멕시코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에게 독자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멕시코 저작권법은 모든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에게 ① 모든 매체에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복제할 권리, ② 번역, 각색 등 변경할 권리, ③ 데이터베이스의 원본이나 사본을 배포할 권리, ④ 공중전달권, ⑤ ⑥에 언급된 운영의 결과물을 복제, 배포 또는 공중 전달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제108조 및 제110조). 그러나 멕시코 저작권법은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독자적인 권리에 관한 특별한 제한이나 예외를 규정하지는 않고 있다.¹¹⁾

발행 2003/11

10) 최정열, 전개논문, 54면, 55면.

11)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데이터베이스의 추가보호, 55면.